6 통관 및 수입검사

관세현황 및 통관절차

- 김 수입 시 '외국환법 및 외국무역법(수입방역관리령)'에 근거하여 수입쿼터(IQ) 제도에 적용되며,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음
- 관세현황
  - 일본은 김에 대한 IQ제도와 관세적용으로 자국 김 산업을 보호하고 있음
  - '김' 쿼터에는 '건조 김(마른김)'쿼터, '무당 조미 김'쿼터, '김 조제품'쿼터가 있음
  - 수입쿼터는 상사쿼터, 수요자쿼터, 선착순쿼터로 구분되며, 상사쿼터는 전년도 수입실적을 감안하여 할당되며, 수요자쿼터는 일본 김협회에서 할당하며, 선착순쿼터는 당해품목기준에 따라 한도 내에서 신청한 순서대로 할당함
  - 상사쿼터와 선착순쿼터는 일본수산청(가공유통과)에서 관할하며 수입업자에게 직접 배정하며, 수요자쿼터는 일본김협회와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이 수출입업체를 선정하여 입찰함
  - 2012년 5월 10일 수요자쿼터 입찰회가 도쿄 오모리 김회관에서 개최되어, 고아사상사연합이 7천 685만 800매(구성비 54.12%), 고젠연합이 3천 340만 8200매(23.53%), 타카오카야연합이 2천 657만 2600매(18.71%), 산에이연합이 491만 2800매(3.46%), 다이스이연합이 24만 9600매(0.18%)로 신청 건조김 1억 4200만매 전량이 입찰됨
  - 1996년 IQ재개 시 수요자쿼터만 있었으나 이후 상사쿼터와 선착순쿼터가 실시되었으며, 수요자쿼터의 경우 2012년도 입찰회에서 볼 수 있듯이 수입업체 5개사에는 중소규모 수입업체가 연합하여 수입하며, 상사쿼터는 수수료는 물론 거치해야할 보증금도 없는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함

▌일본 김 수입 쿼터 개요▐

상품 구분	내 용	비 고
건조 김(마른 김)	실적쿼터(상사쿼터 A1)	한국산 한정
	실적쿼터(상사쿼터 A2)	중국산 한정
	선착순 쿼터	–
	수요자 쿼터	–
무당 조미 김	실적쿼터(상사쿼터 A1)	한국산 한정
	선착순 쿼터	–
	수요자 쿼터	–
김 조제품	실적쿼터(상사쿼터 A1)	한국산 한정
	실적쿼터(상사쿼터 A2)	한국산 이외
	선착순 쿼터	–
	수요자 쿼터	–

▌김 관세 코드 및 세율▐

● 명 칭 : Porphyra tenera(학명)/Laver(영문)/ノリ/海苔 (일명)

H S 번호	품 명	실행관세율
1212.21 - 100	IQ. 건조김(정방형, 430㎠이하/매)	1.50엔/매
21 – 200	감태(아마노리)속 및 그 혼합물(21－100 외의 품목)	40%
21 - 390	기타 식용해초(미조제품*)	15%
2106.90 – 401	IQ. 기타 해초(무당, 장사각형의 종이형태, 430㎠ 이하/매)	25%
90 - 298	IQ. 기타 해초(무당, 기타)	

주) 미조제품* : 김속, 청태속은 IQ

1. 2007년부터 기타 식용해초(무당)는 2106.90 - 401과 2106.90 - 298로 분리됨.
2. 2011년 HS코드는 1212.20－110(건조김 IQ, 1.50엔/매), 1212.20.120(김, IQ, 40%), 1212.20－139(미조제품, 15%), 2106.90－273(김 등 가당조제품 IQ, 28%), 2106.90－401(기타해초.IQ, 무당, 정방형, 430㎠이하/매, 25%), 2106.90－298(기타해초.IQ, 무가당, 기타, 25%),

※ 1매 3g, 30g 10장 당 과세

● 검역현황

– '식품 등 수입신고서' 2부와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후생성검역소식품감시과에 제출하고, 심사 결과 위생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보세구역 내에서 추가검사가 실시 후 수입가능여부가 판단됨

● 통관 절차

– 수입시 관할 세관 제출 서류

• 수입신고서
• 송장, B/L 등 수입관련서류
• 수입승인증
• 식품 등 수입신고서(확인필인이 있는 것)

포장 및 라벨링 규정

● 일본내에서 판매 시 식품위생법(후생성생활위생국식품보건과검역소업무관리실) 및 계량법(통상산업성기계정보산업국계량행정실)에 근거하여 표시해야함

● 일본에서의 김 표기는 「海苔」,「のり」, 「ノリ」임

● '06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'돌김 배제명령'이 받을 당시 한국식 조미 김은 '한국돌김'이나 '돌김[3]'등의 명칭을 사용 중이었는데, 명령받은 제품에는 '돌김'으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양식 김이 사용되었으므로 「경품표시법제4조 제1항 제1호(우량오인)」의 규정을 위반하였음

● 이후, 각 해당업체는 '한국식 조미김', '한국김'으로 명칭을 변경함

● 수년 전까지 파래 김은 상품명 표시에서 고가인 가시파래(スジアオノリ)[4] 및 잎파래(ウスバアオノリ)[5]와 저가인 참홀파래(アオサ)가 혼용되었지만, 감독관청에 따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'파래 김(青のり)' 표시는 가시파래와 잎파래에만 표기가 가능하게 되었으며, 참홀파는 보통 '참홀파래분(アオサ粉)으로 표시되고 있음
(출처 : (주) 후쿠이 홈페이지)

3) '돌김'은 돌에 부착하여 자생하는 천연해초를 의미하고, 채취량이 적어 희소가치가 있음
4) 가시파래(스즈아오노리スジあおのり; enteromorpha prolifera)
5) 잎파래(우수바아오노리ウスバあおのり Ulva linza Linnaeus)

비관세장벽 등 규제사항

● 김 쿼터제 문제

– 수입쿼터제 수량제한

• WTO 제소로 2004년까지 2억4천만매로 유지되었던 수입쿼터가 12억매로 증가되었으며, 2012년에는 다시 15억매로 더 추가되었으나 여전히 일본은 강력한 김 규제책을 시행 중임

• 한국산 수입량은 2012년 9억매로 증가하였지만, 일본 내에 10억매 이상의 한국산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(한국을 다녀간 일본인관광객의 연간 김 구매량이 3억 5백만매로 추정됨)

• 2006년 1월 20일, 2015년까지 한국산 수입쿼터를 2004년도의 약 5배인 12억매까지 단계적 확대를 약속함으로써 한국산 김의 일본내 점유율이 2004년도의 약 2%에서 향후 약 15%까지 확대가 예상됨

– 중국산 수입쿼터 참여와 수량할당의 문제

• 2004년 10월 일본은 중국산 김에 대한 IQ제도 실시로 수입수량을 할당하게 됨

• 한국산의 수입단가는 100매당 10달러고, 중국산이 3~4달러인 점을 감안하면, 수량에 따른 단순할당은 한국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가격과 실적을 함께 고려하거나, 제도 폐지가 요구됨

– 수입쿼터 외 관세장벽

• IQ제도에 따른 수입쿼터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20% 정도의 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큰 장벽으로 작용함